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 재단법인화 등 >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72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및 자율성·독립성 존중 명시(안 제1조 및 제3조)	3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포함 등(안 제6조)	6
3.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재단법인 전환 등(안 제7조 등)	10
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정비 및 인수·합병 관련 계획서 제출 의무 신설 (안 제16조)	19
※ 참고자료	2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28.

다. 회 부 일 : 2026.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지역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법인으로 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인수·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지역신문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조, 제7조, 제12조의2 신설 및 제16조 등).

Ⅲ. 검토의견

1.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및 자율성·독립성 존중 명시(안 제1조 및 제3조)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u>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u>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지역균형발전</u> <u>전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 지역소멸</u> <u>위기 극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에</u> -----.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u>자율성</u> 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 ----- <u>편집 및</u> <u>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u> ----- -----.

현행법¹⁾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지역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역신문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1조는 목적 규정에 다수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문언이 다소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하는 방안²⁾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3조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한 문구 중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현행 문구 중 “취재 및 보도의 자

2)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u>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u>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지역균형발전</u> <u>그리고 지역문화 발전, 지역소</u> <u>멸 위기 극복 등 지역사회에</u> <u>대한 공익적 역할에</u> ----- -----.	제1조(목적) ----- ----- ----- ----- <u>지역사회의</u> <u>균형적인 발전과 공익 증진에</u> -----.

유” 및 “자율성”이라는 부분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법
문언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위해 기존의 문구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적으로 지역소멸위기 극복 등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정안 제1조 목적 문구의 경우 표현을 보다 간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
다는 입장임.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포함 등(안 제6조)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u>의견을 들어</u>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 ----- ----- ----- <u>의결을 거쳐</u> ----- ----- ② ----- ----- 1. ~ 5. (현행과 같음) <u>6.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³⁾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지역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식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여 지원 정책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동 발전지원계획에 다른 입법례⁴⁾와 같이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하여 지역신문 육성을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위한 정책의 실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필수절차로 규정하려는 부분과 관련하여, 지원계획의 주체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 상 지원계획 수립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⁵⁾이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⁶⁾로 기능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필수절차로 개정하면 동 지원계획의 수립·추진주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져 동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해지고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한 정책변경 등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특히, 동 개정안은 위원회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⁷⁾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의 주체인 국가 정책에 대하여 별도 법인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경우 정책의 결정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 및 진흥계획 등의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이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경우 정책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 발전지원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7)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3.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재단법인 전환 등(안 제7조 등)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는 방식에서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간주하며,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위원장에게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한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① -----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지역신문발전위원회----- ----- -----.
<신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③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④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⑤ (생략) <u><신설></u> <u><신설></u>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u>의견제시</u>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제8조의2(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 -----. 1. ----- -----<u>의결</u>

현행	개정안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u>심의</u>	3. ----- ----- ----- <u>의결</u>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u>심의</u>	4. ----- ----- ----- <u>의결</u>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u>심의</u> 및 실제조사	5. ----- ----- <u>의결</u>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대우) <u>위원회</u>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① <u>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u> ----- ----- ----- ----- ----- ② <u>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u>
<신설>	
<신설>	제12조의2(사무국) ①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u> ② <u>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신설>	제12조의3(감사) ① <u>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u> ② <u>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u> ③ <u>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u>

현행	개정안
	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현행법 제7조⁸⁾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위원회는 동법 제8조⁹⁾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이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음.¹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함.

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2.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3.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법 제9조¹¹⁾에 따라 위원회는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운용 등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¹²⁾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

1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제조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지역언론계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952호)와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자료: “‘지발위에 독립 사무국’ 재단법인 전환법 발의”, 한국기자협회, 2026.3.3.

된 자문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간주하며, 위원장 외의 위원을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과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에 사무국과 상임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며, 위원회의 직무로서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의결 등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표]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비고
설치 형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재단법인	현행법 제7조 // 개정안 제7조
위 원	위원장	명예직 보수 미지급	상임 이사 보수 지급 겸직금지의무 부과	현행법 제10조 // 개정안 제8조의2 및 제10조
	위원장 외	명예직 보수 미지급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0조
위원회의 직무		①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②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③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④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의 심의 및 실제조사	①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결 ②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의결 ③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의결 ④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의 의결 및 실제조사	현행법 제9조 // 개정안 제9조 * 개정 대상 직무만 명시
사무국		-	설치 규정 신설	개정안 제12조의2 신설
감사		-	인원: 1명(상임), 임기: 2년(1년 단위 연임)	개정안 제12조의3 신설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춘 독립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무국과 감사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행정적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024년 12월 기준 지역신문사가 669개¹³⁾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8명, 실질적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진흥재단 소속의 담당 직원은 6명으로 수요에 비해 지원인력이 부족¹⁴⁾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 등의 문제로 이미 선정된 사업의 집행이 보류되는 사례도 발생¹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별도 법인화가 지역신문 지원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지금의 자문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음.

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4) 「민주당 박수현 '지역신문발전기금 최소 250억 수준 복원해야」, 미디어오늘, 2025.6.26.

15) 「다음주 출국인데 갑자기 보류... 황당한 지발위 지원사업 보류 통보, 왜?」, 미디어오늘, 2026.8.26.

현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법인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언론진흥재단의 기존 인력·시스템 등도 활용하고 있는바, 위원회를 별도 법인화할 경우 별도의 조직·인력·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오히려 지역신문 지원 사업의 비중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별도 법인화가 되는 동시에 지원계획에 대한 사전 의결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정책 수립·추진에 있어 동 체계가 적합한지 여부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에 따른 지역신문 정책 수립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인바 재단법인에서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별도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고정 운영비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역신문 지원 사업의 비중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치할 필요성 및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고, 타 언론 관련 기금인 언론진흥기금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이관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마지막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사)바른지역언론연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부 조항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함.¹⁶⁾

16)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타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참조

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정비 및 인수·합병 관련 계획서 제출 의무 신설(안 제16조)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 요건에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지역신문일 것을 추가하고, 지역신문의 인수·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가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생략 1. ~ 4.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④·⑤ (생략)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5.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 다만, 지역의 신문의 인수·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지역신문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¹⁷⁾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광고 비중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신문 등에 대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신문의 인수·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독자 기반과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를 통해 지역신문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지역신문 인수·합병 시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1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2025. 1. 31.>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재무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점¹⁸⁾을 고려할 때 개정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을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언론진흥기금 지원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신문 인수·합병 시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점, 관련자료 미제출 시에도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어 입법 실효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18)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이미 매년 편집자율권, 재무건전성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있음.

참고 1

타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기획예산처 (‘26.5.12)	• 개정안 수용곤란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①별도 법인으로 설치할 필요성 및 ②사무국 설치 필요성 없음 *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위탁)에 의거, 언론진흥재단에서 해당 업무 처리 중 - 아울러 타 언론 관련 기금인 언론진흥기금도 언론재단을 통해 기금 관리(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도 별도 사무국 없는 점 고려 필요) - 기존 언론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이관문제 등 발생 우려
법무부 (‘26.7.13.)	• 충분 검토 필요 - 자문위원회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임.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그 위원회에 정부의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 및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할 우려가 존재하는바 충분 검토 필요 * 안 제6조의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의 주체는 문체부장관이고, 이 과정에서 문체부 소속의 자문기구가 아닌 독립된 재단법인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문체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소재 불분명하게 할 소지도 존재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6.5.11)	• 지역신문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법인으로 명시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 또한 재정력이 열악해 이합집산이 잦은 지역신문 현실을 고려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것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제16조(기금의 지원등)에 문체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에서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신문사에 한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를 우선 집행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 - 경영 및 편집독립성을 어느정도 갖춘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에 지자체 광고를 주는게 언론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한국언론진흥재단 (‘26.5.11)	• 제1조(목적) 및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 수용 •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9조(위원회의 직무등) : 지발위 의결권 관련, 정책결정권 및 재정집행권한은 행정부에 귀속되는데 이를 재단법인에 부여하여 정책결정권과 집행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해질 우려(불수용), 지원계획에 예산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동의 •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8조의2(위원장 등) : 지발위를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전환, 사실상 정책결정·기금 운용권한을 준행정기관에 이양하는 구조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불수용) • 제10조(위원의 대우), 제12조의2(사무국) : 사실상 독립 공공기관 신설에 준하는 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불수용) •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 기금 지원 신문요건에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은 수용, 인수·합병으로 소유권 변경 시 지배주주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계획서 제출은 민간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예방을 위해 의무규정을 권고 수준으로 조정(노력하여야 한다)
(사)바른지역언론연대 (‘26.3.5) *손술 의원 발의 지역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제출	•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 성명서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전환 즉각 추진,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독립 사무국 설치,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 조속히 통과

참고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개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7조~제12조

- **(목적·성격)**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 행정기관위원회(자문위원회)
- **(구성)** 9명 이내, 문체부 장관 위촉 *임기3년, 명예직
 - * 국회 문체위 추천인사 3명,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 추천인사 각 1명,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퇴직 3년 경과한 인사 2명 포함
 - ** '25.6월 현재 7기 위원회(8명) 구성(임기 '25.1~'25.12 위원장(위원중 호선) 김찬영)
- **(직무)** 1.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지역신문 발전지원 주요시책 평가 3.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 심의 5.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심의 및 실제조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 협력·조정 8.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사무지원기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관리
 - 지역언론팀 : 6명(팀장/팀원/계약직 : 1명/4명/1명)

〈지역신문발전기금〉 *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13조~제16조

- **(목적)**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
- **(내용)** 편집자육권 등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 대상 기금 우선 지원('26년 74개)
 - * 선정기준 : 지역신문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우선지원 기준) 등
- **(재원)** 일반회계 및 타기금 전입금(자체수입 없음)
 - * '05~'22년 일반회계 전입, '23년 일반회계 및 언론기금 전입, '24~'26년 언론기금 전입
- **(사업비)** '05년 신설 시 205억원, '26년 118억원('25년 83억원 대비 35억원 증액)
 - * '05년 205억원 → '10년 120억원 → '15년 95억원 → '20년 87억원 → '25년 83억원 → '26년 118억원

<최근 5년간 수입·지출 현황(단위:백만원)> * '25년말 기준 여유자금은 44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수입	자체수입(이자수입, 잔액 등)	160	160	165	487	387
	일반회계 전입금	8,300	2,500	-	-	-
	언론진흥기금 전입금	-	6,000	8,500	8,500	11,207
지출	사업비	8,264	8,251	8,251	8,251	11,751
	기금운영비	575	562	555	556	554

- **(주요사업)** 장비·인력 지원, 기획취재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취약계층 구독지원, 신문활용 교육 등

참고 3

관련사업 및 추진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출 사업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4년	8,806 (사업비 8,251+ 기금관리비 555)	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지원 8,251 ·우선지원대상사(지역 일주간지) 68개 선정지원 -지역신문역량지원(기획취재지원 49사, 지역신문제안사업 15사, 지역민참여보도 47사,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41사 44명,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68사,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 7사 등) -지역공헌활동지원(소외계층구독료지원 64사,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구독료 62사, 프로그램 18사 등)) 기금관리비 555 ·기금 관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등 -인건비 347(5명), 경상비 208
'25년	8,807 (사업비 8,251+ 기금관리비 556)	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지원 8,251 ·우선지원대상사(지역 일주간지) 67개 선정지원 -지역신문역량지원(기획취재지원 56사, 지역신문제안사업 17사, 지역민참여보도 49사,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38사 46명,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67사,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 7사 등) -지역공헌활동지원(소외계층구독료지원 63사,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구독료 63사, 프로그램 17사 등)) 기금관리비 556 ·기금 관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등 -인건비 347(5명), 경상비 209
'26년	12,305 (사업비 11,751+ 기금관리비 554)	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지원 11,751 ·우선지원대상사(지역 일주간지) 74개 선정지원 중 기금관리비 554 ·기금 관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등 -인건비 347(5명), 경상비 207

○ '26년 지발위 및 기금운용·관리 관련 제반 소요 예산

- 총 788백만원(지발기금 기금관리비 554+부족분 충당 언론재단 법인회계 234)

구 분	'26년 예산		
	합계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예산	추가집행(법인회계)
□ 합계	788	554	234
○ 인건비	503	347	156
▪ 보수	503	347(직원5명 1~8월 급여)	156(직원5명 9~12월 급여, 직원1명 1~12월 급여)
○ 경상비	285	207	78
▪ 운영비	232	150(회의, 업무협의, 공공요금 등) 50(전문위원 자료조사)	10(전문위원 자료조사) 22(정책연구-저널리즘품질조사)
▪ 고용부담금	53	7(직원1명)	46(직원1명 부족분+직원5명)